#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58

발의연월일: 2022. 6. 10.

발 의 자:배준영·김상훈·강대식

양금희 • 구자근 • 조명희

정우택 · 이종배 · 김용판

최춘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두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악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기준금액보다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2천4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의 4천32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각각 확대하여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12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4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320만원

제100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4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5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312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312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12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2천200 분의 312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32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620분 의 33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 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격) ①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	
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	2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	
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	
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	
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	
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	
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 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 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 일 것.

<u>가구원 구성</u>	<u>총소득기준금액</u>
<u>단독가구</u>	<u> 2천200만원</u>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 3. 4. (생략)
- ② ~ ⑦ (생 략)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 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u>가</u>	400만원 미만	<u>총</u>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u>나</u>	<u>400만원 이상</u> <u>900만원 미만</u>	150만원
<u>다</u>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1천300분의 150

 	 	_
 	 	_
 	 	_
 	 	_

<u>가구원 구성</u>	<u>총소득기준금액</u>
<u>단독가구</u>	<u> 2천400만원</u>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320만원

- 3. 4.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①	-
	-
	_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u>가</u>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u>나</u>	<u>400만원 이상</u> <u>900만원 미만</u>	<u>165만원</u>
<u>다</u>	900만원 이상 2천400만원 미만	165만원- (총급여액등-900만원)×1천500분의165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u>목</u> 별	<u>총급여액</u> 등	근로장려금	
71	700만원	<u>총</u> 급여액 등 × 700	
<u>가</u>	<u>미만</u>	<u>분의 260</u>	
	700만원		
나	<u>이상</u>	OCOUP O	
4	<u>1천400만</u>	<u>260만원</u>	
	<u>원 미만</u>		
	<u>1천400만</u>	260만원 - (총급여	
<u>다</u>	<u>원 이상</u>	<u>액 등 - 1천400만</u>	
	3천200만	<u>원) × 1천800분의</u>	
	<u>원 미만</u>	<u>260</u>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u>목</u> 별	<u>총급여액</u> 등	근로장려금
<u>가</u>	800만원	<u>총</u> 급여액 등 × 800
	<u>미만</u>	분의 300
<u>나</u>	800 만 원	
	<u>이상</u>	<u>300만원</u>
	<u> 1천700만</u>	
	<u>원 미만</u>	
<u>다</u>	1천700만	300만원 - (총급여
	<u>원 이상</u>	<u>액 등 - 1천700만</u>
	3천800만	<u>원) × 2천100분의</u>
	<u>원 미만</u>	300

② ~ ⑤ (생 략)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 별	<u>총</u> 급여액 <u>등</u>	근로장려금
<u>가</u>	<u>700만원</u>	<u>총</u> 급여액 등 × 700
	<u>미만</u>	<u>분의 312</u>
나	<u>700만원</u>	312만원
	<u>이상</u>	
	<u>1천400만</u>	
	원 미만	
<u>다</u>	1천400만	312만원 - (총급여
	원 이상	액 등 - 1천400만
	3천600만	원) × 2천200분의
	<u>원 미만</u>	<u>312</u>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u>목</u> 별	<u>총급여액</u> 등	근로장려금
<u>가</u>	<u>800만원</u> 미만	<u>총</u> 급여액 등 × 800 분의 330
<u>나</u>	800 만 원 이상 1천700만 원 미만	<u>330만원</u>
<u>다</u>	1천700만원 이상4천32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   액 등 - 1천700만   원) × 2천620분의   330 -

② ~ ⑤ (현행과 같음)